

---

서울대학교 수의대 동물병원(80동) 증개축 사업 설계공모

## 질 의 답 변 서

---

2024. 5.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모 규정 또는 지침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됩니다.

연번	질 의	답 변
1	기존건물에 대한 가치평가후 그 중 일부를 계획에 존치, 반영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동물병원은 일반 건물과 달리 '감염 위험'이 있어 기존건물 존치 불가함
2	제공된 파일자료 "240414 사업범위_수의대.dwg"에 따르면 80동 증개축 사업의 범위 중 일부가 기존건물 80-1과 입면선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기존 80-1동과 연결하여 계획할 경우, - 사업범위 내의 중복된 입면선과 80-1동의 연결관 등을 철거해도 되는지 여부 기존 건물 80-1동의 중복된 입면선 주변 평면 계획 추후 변경 가능여부, - 새로이 계획되는 80동의 주차계획을 기존 80-1동의 지하1층과 연계한 진출입 계획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공모사업 범위의 변경가능 여부	- 80-1동에 대한 철거 및 평면계획 조정불가(단, 기존 연결통로 철거 부위, 신규 연결 통로 생성에 따른 연결부의 철거 및 일부 구간의 평면 조정은 예외적 인정) - 80-1동과 주차장 연계하여 계획 가능하나 지하층 공사로 인한 공사비 증가를 고려해야 함(해당 사유로 공사비 증액 불가) - 연결 통로의 개수, 층 등은 공모 참여자가 자유롭게 제안 가능 - 사업 범위 조정 불가
3	주어진 법적 요건 내 계획에 따라 층수 변경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예) 지하3층-지상4층 등	-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지상층은 6층 이하로 제안해야 하며, 지하층은 자유롭게 제안 가능 - 지하로 층수를 많이 계획 할 경우, 지하에 수용 적합한 프로그램에 따른 공간 계획 제시가 필요하며 지하층 배치의 이점이 명확해야 함. 특히,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수술방, 처치실 등의 공간에는 충분한 수납과 장비반입 및 보행 동선이 효율적으로 확보되어야 함
4	AVMA인증 기준과 관련한 정확한 자료의 제공 가능 여부를 질의합니다.	- 추가로 제공 가능한 자료는 없으며, 기존에 제공된 자료에 근거하여 설계하면 AVMA 인증기준에 부합함
5	본 설계설명서에서 뜻하는 설계소요 (400~1,000자 내외)가 아이디어 스케치를 의미하는지, 단순 텍스트 설명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항목 (페이지 번호)	- 400~1,000자 내외의 개념 및 계획 의도에 대한 설명문을 의미함
6	건축 대지와 사업 대지는 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으로 나눠져 있는것으로 확인됩니다. 정확한 용도지역은 무엇으로 기준해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당 사업 범위는 도시지역 중 1종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이 분포되어 있음 ※관악캠퍼스는 도시계획시설(학교)이며 제공된 세부시설조성계획 자료 참고 요망(당선작 선정 후 도시계획 인허가 추진시 세부개요 등 필요자료 작성)
7	동물 재활치료 녹지는 사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지만 본 설계 지침서에 이와 연계할 수 있는 구성을 요한다 파악됩니다. 해당 녹지까지 사업범위로 포함시켜서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녹지의 조경계획 등 변경 불가하나 건물에서 해당 산책로까지의 접근 동선을 고려 해야 함
8	동물사육실은 실험용 동물을 사육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동물을 사육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동물사육실은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공간임. 개, 토끼 등을 사육할 예정
9	수술실습실은 사육동물을 이용하여 실습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 수술실습실에서는 사육동물 외에도 사체를 활용한 수술 실습도 진행될 수 있으며,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사육동물 외의 동물에서도 중성화 실습 등의 수술 실습이 진행될 수 있음

연번	질 의	답 변
10	임상시험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홈페이지( <a href="https://vmth.snu.ac.kr">https://vmth.snu.ac.kr</a> )의 '임상 시험 모집 공고' 부분 참조
11	AVMA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 답변 4번 참조
12	외래진료시설 중 진찰실-COMMUNITY PRACTICE SERVICE의 용도와 할당된 면적은 몇제곱미터인지.	- 현재 할당된 면적은 없으나 추후 반영될 수 있으며 Community practice service는 primary care service를 위한 공간으로, 의뢰되는 환자의 진단 및 치료가 아닌 백신 및 건강 검진 같은 일차 진료를 위해 사용되는 공간을 의미함
13	건물 개요 중 층수가 지하1층/지상6층으로 되어 있는데, 층수제한이 있는지. 제한이 있다면 지하층수와 지상층수의 최대 건축가능 층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세부시설조성계획에 따르면 해당대지의 높이제한은 지표로부터 최대40m이하(심의시 완화가능)라고 되어있음)	- 답변 3번 참조
14	사업범위 바깥부분 기존 외부주차장(80-1동 전면주차장)을 차량동선 조정을 위해 다시 계획할 수 있는지.	- 가능하나 기존 주차대수 혹은 그 이상을 유지할 것
15	사업범위 바깥 부분인 80-1동 상부에 건축이 가능한지	- 불가함
16	85-1동 차량 진입로 상부에 건축이 가능한지.	- 사업범위 밖으로 건축계획 불가
17	지침상의 층수(지하1층, 지상6층) 변경가능한지요?	- 답변 3번 참조
18	지침상의 총 연면적 9,146㎡의 오차허용범위(ex. 9,146㎡이내 혹은 +5%)내 변경가능한지요?	- 연면적은 9,146㎡ 이내에서만 계획 가능하며, 실별 면적은 지침서 면적의 ± 10% 조정하여 디자인할 수 있음
19	'계획안의 모형'이라함은 스터디단계의 매스모형까지도 포함하는지요?	- 스터디단계의 매스모형까지 포함
20	조감도용 드론촬영사진 배포여부 또는 드론 촬영 가능한지요?	- 추가 제공 예정
21	기술검토(7월3일)일과, 작품 심사(7월 5일)일, 양일 모두 해당되는지요? 심사시작 시간과 종료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 심사시간은 미정 (추후 공지 예정)
22	실시간 공개 URL 공지 여부	- URL은 심사 당일 공지하며, 유튜브 '마실와이드 채널'에서 생중계 예정
23	심사시 감안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감점을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고려한다는 뜻 인지요?	- 심사 시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점 등을 결정하여 반영
24	80-1동 동물병원 변경가능 범위 즉 외장, 층별 평면	- 답변 2번 참조

연번	질 의	답 변
	레이아웃 변경 등의 변경이 가능한지요?	
25	ISFM 인증 등급 중 사용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등급이 있는지요?	- 골드 등급 인증을 목표로 하며 기준은 한국고양이수의사회 (ksfm.co.kr)를 참조
26	스페이스 프로그램에서 본부공용공간의 용도 및 성격은 무엇인지요?	-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실로 지침서에 제시된 면적만큼 완공 후 서울대학교 본부에서 관리하게 될 공용공간으로서 '본부공용공간'으로 명기하여 실배치
27	동물사육실에 사육되는 동물의 종류와 개체수는 무엇인지요?	- 개, 토끼이며 개체수보다는 토끼 및 개를 사육할 때의 최소 권장공간이 중요. 붙임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u>실험동물운영위원회(IACUC)운영 가이드라인</u> 의 내용 참조
28	해당 대상지 혹은 주변 영역의 지반조사자료 제공 가능한지요?	- 80-1동 공사를 위해 진행했던 지반보고서 공유 가능(2014년 작성)
29	응급실과 야생동물진료센터 출입구를 각각 별도로 분리해야하는지 혹은 둘을 통합해서 설치하고 병원과 분리하면 되는지요?	- 분리 필수
30	'현 80-1동과 함께 합리적으로 작동하도록'과 관련하여 증축동의 주요 진료대상이 개와 고양이로 구분되어 있는데, 80-1동은 진료대상이 동일한지 혹은 달라지는 것인지요?	- 동일함
31	건축가능범위 중 수의과대학측은 일부 축소되어 있는데, 지하층까지도 그 범위내에서만 계획해야하는지요?	- 제공자료1번의 사업 범위 내에서만 계획해야 함
32	본부공용공간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인지 질의드립니다.	- 답변 26번 참조
33	중개의학실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질의드립니다. (사업범위 도면)	- 기초 연구 결과를 임상적 응용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는 연구 시설임. 기초 과학에서 얻어진 발견을 임상적 응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공간으로 예를 들어 특정 유전자가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유전자 치료법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 가능함. 신약 개발 및 테스트, 진단 방법 개발, 임상 시험 준비, 다학제적 연구, 기술 이전 및 협력, 교육 및 훈련 등이 가능 함.
34	건축 가능 영역과 사업 범위는 어떻게 다른지 상세 설명 요청드립니다.	- 건축 가능 영역: 지상 및 지하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범위 - 사업범위: 외부 조경계획을 포함해야하는 범위로 본 사업의 가상 대지 역할(허가 및 준공시 생태면적률 계산의 기준으로 중요한 요소임) - 설계개요는 서울대 전체 캠퍼스가 아닌 본 사업 기준으로 작성 - 대지면적: 제공자료 1번의 사업범위 캐드파일의 "사업범위"로 적용 - 건폐율, 용적률, 조경면적, 주차대수: 기입 불필요

연번	질 의	답 변				
<p>35 (추가)</p>	<p>&lt;공간계획에 대한 사용자의 추가 요구사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환자, 보호자, 학생, 행정직원의 동선이 체계화되어 있고 분리가 되어야 함. 또한, 의료 행위에 따른 순차적 연결이 중요함(의료 과정에 따른 진단, 치료, 대기에 따른 순차적인 흐름이 매우 중요)</li> <li>- 80-1동과 연계된 동선 확보가 중요함(기존 공간과 상호 보완적이고, 중복적이지 않은 공간)</li> <li>- 80-1동과 하나의 병원으로 운영 가능한 계획안</li> <li>- 내원객과 내부 고객, 학생 수직동선 분리</li> <li>- 기존 80-1동의 리모델링 범위를 최소화하는 계획안과 디자인의 적정성</li> <li>- 수의과대학으로서 명확한 인지성 확보</li> <li>- 서울대 마스터 플랜에 부합</li> <li>- 개와 고양이 진료 처치실의 분리와 원스톱 의료 가능</li> <li>- 의료진의 동선 최적화</li> <li>- 야생동물 및 응급 격리동물실의 명확한 동선분리</li> <li>- 수련 병원으로서의 학생 및 전공의 편의공간 확보</li> <li>- 장래의 실용도 변경에 유리한 가변성 확보</li> <li>- 보호자를 위한 충분한 대기공간 계획</li> <li>- 인수 공통 질환에 대비한 계획</li> <li>- 효과적인 경사지 활용</li> <li>- 옥상정원을 활용한 직원 휴게공간 확보</li> <li>- 표준화 모듈 진료실 계획</li> </ul>					
<p>36 (추가)</p>	<p>[과업요구서 내용 수정] 3page</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0%;"><b>원문</b></td> <td>○ 공모 당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환경보전방안) 협의기준은 34%('24년 ~ '25년)이상 이며, 설계추진 과정에서 변경되는 기준 및 환경보전방안 심의시 요구되는 34%이상의 상향 비율도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td> </tr> <tr> <td><b>변경</b></td> <td>○ 공모 당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환경보전방안)의 <b>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 비율</b> 협의기준은 34%('24년 ~ '25년)이상 이며, 설계추진 과정에서 변경되는 기준 및 환경보전방안 심의시 요구되는 34%이상의 상향 비율도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td> </tr> </table>	<b>원문</b>	○ 공모 당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환경보전방안) 협의기준은 34%('24년 ~ '25년)이상 이며, 설계추진 과정에서 변경되는 기준 및 환경보전방안 심의시 요구되는 34%이상의 상향 비율도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b>변경</b>	○ 공모 당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환경보전방안)의 <b>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 비율</b> 협의기준은 34%('24년 ~ '25년)이상 이며, 설계추진 과정에서 변경되는 기준 및 환경보전방안 심의시 요구되는 34%이상의 상향 비율도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b>원문</b>	○ 공모 당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환경보전방안) 협의기준은 34%('24년 ~ '25년)이상 이며, 설계추진 과정에서 변경되는 기준 및 환경보전방안 심의시 요구되는 34%이상의 상향 비율도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b>변경</b>	○ 공모 당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환경보전방안)의 <b>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 비율</b> 협의기준은 34%('24년 ~ '25년)이상 이며, 설계추진 과정에서 변경되는 기준 및 환경보전방안 심의시 요구되는 34%이상의 상향 비율도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p>37 (추가)</p>	<p>[과업요구서 내용 추가] 3page</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0%;"><b>원문</b></td> <td>○ 생태면적률은 관계법령 및 환경보전방안 검토 시 요구되는 면적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td> </tr> <tr> <td><b>변경</b></td> <td>○ 생태면적률은 관계법령 및 환경보전방안 검토 시 요구되는 면적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b>공모 당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환경보전방안) 조례(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생태면적률은 35%이며, 설계추진 과정에서 변경되는 기준 및 환경보전방안 심의시 요구되는 35%이상의 상향 비율도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b></td> </tr> </table>	<b>원문</b>	○ 생태면적률은 관계법령 및 환경보전방안 검토 시 요구되는 면적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b>변경</b>	○ 생태면적률은 관계법령 및 환경보전방안 검토 시 요구되는 면적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b>공모 당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환경보전방안) 조례(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생태면적률은 35%이며, 설계추진 과정에서 변경되는 기준 및 환경보전방안 심의시 요구되는 35%이상의 상향 비율도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b>
<b>원문</b>	○ 생태면적률은 관계법령 및 환경보전방안 검토 시 요구되는 면적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b>변경</b>	○ 생태면적률은 관계법령 및 환경보전방안 검토 시 요구되는 면적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b>공모 당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환경보전방안) 조례(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생태면적률은 35%이며, 설계추진 과정에서 변경되는 기준 및 환경보전방안 심의시 요구되는 35%이상의 상향 비율도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b>					

[토끼, 개의 쌍(pairs) 또는 그룹 사육할 때의 최소 권장공간]

동물종	체중 <sup>a</sup>	바닥면적/마리 <sup>b</sup>		높이 <sup>c</sup>		비고
		cm <sup>2</sup>	in <sup>2</sup>	cm	in	
토끼	<2	0.14	1.5	40.5	16	더 큰 토끼에게는 토끼가 일어설 수 있는 충분한 더 높은 케이지가 필요할 수 있다
	4까지	0.28	3.0	40.5	16	
	5.4까지	0.37	4.0	40.5	16	
	5.4 <sup>d</sup>	0.46≤	5.0≤	40.5	16	
개 <sup>e</sup>	<15	0.74	8.0	-	-	케이지 높이는 개가 발바닥을 케이지 바닥에 대고 편안하게 똑바로 설 수 있기에 충분해야 한다.
	30까지	1.20	12.0	-	-	
	30 <sup>d</sup> <	2.40≤	24.0≤	-	-	

a lb = kg x 2.2

b 단독 사육 동물이 쌍으로 또는 군으로 사육되는 동물에 비해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할 수 있다.

c 케이지의 높이란 바닥면에서 최고 높이까지의 거리

d 이보다 체중이 무거운 동물은 행동 표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간을 가산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e 동물의 개체별 체형 및 행동에 따라 권장공간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개, 특히 체중 범위의 상한선에 있는 동물은 동물복지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추가 공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규정(USDA 1985)은 각 케이지의 높이가 "편안한 자세"로 설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할 것과 최소 바닥면적 ft<sup>2</sup>(평방피트)가 전체 체장(in, 인치)(개의 꼬끝에서 꼬리의 미근부까지의 길이)에 6인치를 더한 값의 제곱을 다시 114로 나눈 값과 일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f 더 많은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고 높이 제한이 없는 울타리를 친 사육장소(예: 우리 pens, 방목장 runs, 개 사육장 kennels)가 바람직하다.